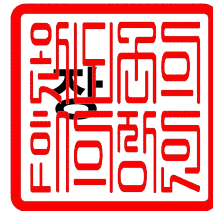


완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완 도 군 의 회 의



1. 조 례 명 : 완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 의 자 : 지 민 의 원

3. 개정이유

- 완도군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지원사업(안 제4조,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거리공연 질서유지(안 제6조, 안 제7조)
- 거리공연사업의 민간위탁 및 포상(안 제8조, 안 제9조)

5. 조례안예고기간 : 2024. 7. 5 . ~ 2024. 7. 10.

6.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3,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7.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전화: 061-550-5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악기연주 포함),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의 모든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소음·진

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소음 피해 등 민원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사용, 소음피해 발생, 군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관리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